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5.01.0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특별자산파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동근	1983	책임 (팀장)	8	5,435	-	-	3.51	-	14 년 11 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2025년 7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분배정책을 수립하여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분배락이 발생하여 펀드의 NAV가 감소할 수 있으며, 분배금 수령으로 인하여 세제상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며,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ETF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합성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한 합성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위험관리 및 담보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계약에 따른 복제비용, 헷징비용 및 각종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외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으며, 거래소의 정산이행 보증과 같은 별도의 시장참여자 보호 장치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 투자보다 더 높은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스왑) 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간에 투자수익의 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 일정 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 시 계약 미갱신 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거래상대방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교체·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할 대체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실현되도록 운용할 예정이지만, 계약 거래상대방 부재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조건 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계약조건등의 변경으로 수익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가격의 변경, 기초자산 가격 평가의 결정시점의 변경, 기타 지급일 등이 장외파생상품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기초자산 가격 산출의 폐지나 단절의 발생,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 중단 또는 정지로 인해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써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익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소 등의 문제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심하게 지연된 경우, 정규 매매 마감시각 이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한 경우 및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익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조건이 조정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익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조건이 변경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에 노출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금공여형(funded swap) 구조로 설정된 현금을 거래상대방에게 공여하고 원금과 기초지수 수익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초지수 수익률을 수취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스왑스프레드 등)은 -0.10% 이내 수준(연환산 비용, 2024.01.08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인해 수익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일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으로 산출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담보 설정 등이 있는 경우 담보의 가치만큼 최대 손실에 대한 추정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 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가치하락 및 거래상대방의 불충분한 담보제공은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증가시키며 경우에 따라 담보가치가 장외파생상품평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담보의 매각처분 등을 하더라도 담보가치를 하회한 만큼 투자신탁의 자산이 보호받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1 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 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도록 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ETF 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용의 실패에 따른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적오차는 시장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따른 운용의 결과로 발생가능하며, 비교지수와 의 괴리는 매일 공고되는 추적오차를 공고로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관리하여 비교지수와 의 성과괴리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수공시 시간에 따른 iNAV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KOFR 지수의 공시 시간은 매일 오전 11 시입니다. 이로 인해 증권시장이 시작하는 오전 9 시부터 오전 11 시까지의 시간 동안 전일 지수값으로 iNAV 가 산출됩니다. 해당 시간 동안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거래호가와 iNAV 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합성상장지수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본항에서는 "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 규정 제 113 조제 1 항제 5 호가목(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규정 제 113 조제 1 항제 5 호가목(2)에 따른 등급이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제 1 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규정 제 113 조제 1 항제 5 호가목(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0 의 2 제 1 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 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지수 방법론에 따른 추적오차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지수는 자본손익 및 경과이자 수익 이외에 발생한 배당 등의 현금을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해 산출하는 총수익(Total Return) 지수입니다. 또한, 지수 구성종목의 배당락일에 세전 예상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배당확정시 이를 보정하는 기초지수 방법론에 따라 수익률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에 따라 분배로 인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의 영업점과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table><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td></tr></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운용관련 자문업자	해당사항 없음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2025년 8월 2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